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백색 수정액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을 무효로 처리함.

1.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상소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이라는 점에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피의자신문장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와(과) 구별된다. 또한 상소는 미확정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이라는 점에서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절차인 ()와(과) 구별된다. 한편 상소는 상급법원에 구제를 신청하는 불복방법이라는 점에서 동급법원에 구제를 구하는 ()와(과) 구별된다.

- ① 재정신청, 준항고, 재심, 이의신청
② 검찰항고, 준항고, 비상상고, 정식재판청구
③ 헌법소원, 이의신청, 재심, 항고
④ 검찰항고, 항고, 비상상고, 이의신청

2.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누가 담당하는가에 따른 구별 중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립·갈등하는 대립당사자의 소송활동
- 법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
- 변증법적 원리
- 탄핵주의와 결합

- ① 우리 형사소송에서 공소장일본주의가 이러한 기본구조의 표현이다.
② 피고인이 소송에서 적극적 방어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심리의 폐쇄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③ 이를 철저히 할 경우 형사소송의 스포츠화 또는 합법적 도박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④ 이를 철저히 할 경우 검사와 피고인 사이에 공격·방어가 끊임 없이 되풀이 되어 사건의 심리에 능률과 신속을 꾀할 수 없다.

3.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원칙적으로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호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호하였으나 검사가 상호부분에 대한 상호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된다.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치로서, 재심사건이나 악식명령 또는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불이익한가의 여부는 형에 관하여만 비교판단 할 것이 아니라 그 형을 선고함으로써 인하여 다른 법규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모든 법적, 경제적 불이익을 비교판단하여야 하므로, 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2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및 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9년, 5년 동안의 공개명령 및 6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조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① ㉠, ㉡, ㉢, ㉣ ② ㉡, ㉢, ㉣
③ ㉠, ㉢ ④ ㉢, ㉣

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사건의 내용이 국가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판결선고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재판장은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음 또는 녹화하는 자에 대하여 회정을 명할 수 있다.
㉢ 형소법은 시일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애매하게 되고 변론내용의 증명관계를 피하기 위하여 서면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구두변론주의를 보충하고 있다.
㉣ 공판기일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하며, 특히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5. 다음 중 면소의 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
② 악식명령에 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③ 범죄 후의 법령개정으로 형이 폐지되었을 경우
④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집중심리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특정강력범죄의 심리와 판결에 한하여 집중심리주의가 적용된다.
㉡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
㉢ 매일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 기일부터 5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 판결선고일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은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후 익일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익일선고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 집중심리제도로 인한 졸속재판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인제도를 모든 구속사건으로 확대하였고,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였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7. 증인신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인적격 없는 자에 대해 증인신문한 결과 진술을 얻었더라도 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②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③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해야하나,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④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기관력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죄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죄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죄금통고를 받고 그 범죄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벌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는, 범죄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죄행위 자체 및 그 범죄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행위에 한정되므로, 범죄행위와 같은 때, 같은 곳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죄행위와 별개의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죄금납부로 인한 불처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 검사가 절도죄에 관하여 일단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가 후에 다시 기소하여도 기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법원이 그 기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법원은 이러한 공소제기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상습범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 판결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롭게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해야한다.

9. 고소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죄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③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다.
④ 친고죄에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0. 소송행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송행위는 소송절차를 조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관에게 사건을 배분하는 행위는 소송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법원의 소송행위에는 피고사건에 대한 심리와 재판 뿐만 아니라 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의 소송행위나 법원사무관이 공판절차에서 조서를 작성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③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면서도 그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소송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법상의 법률행위와 구별된다.
④ 공소의 제기, 기피신청, 증거조사, 상소의 제기 등의 행위는 절차형성행위에 속한다.

11. 다음 중 고소의 취소 및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취소에는 그 대리가 불가능하다.
- ②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고소취소의 효력은 인정된다.
- ③ 친고죄가 아닌 피고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에 친고죄로 공소 사실이 변경되고 항소심에서 비로소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친고죄에 대한 유효한 고소취소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④ 간통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심 계속 중에 고소인이 피고인과 다시 혼인하더라도 간통고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12.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과 관련된 판례이다. 틀린 것은?

- ① 형사소송법 등에서 친고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이 관여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피해 청소년이 그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소송행위를 단독으로 결정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헌법이 요구하는 국가의 책무인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방기하는 결과로 된다.
- ②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이라 함은 소송당사자가 유효하게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의미한다.
- ③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소송능력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있다.
- ④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비록 14세 10개월의 어린 나이였다고는 하나,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당해 사건 범행의 의미, 본인이 피해를 당한 정황, 자신이 하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의미 및 효과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등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13. 다음 중 피의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소송법상의 권리를 모두 바르게 고른 것은 ?

- | | |
|----------------|----------------|
| ㉠ 접견교통권 | ㉡ 보석청구권 |
| ㉢ 증거보전청구권 |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
| ㉤ 수사상의 증인신문청구권 | |

- ① ㉠, ㉡ ② ㉠, ㉢ ③ ㉢, ㉣ ④ ㉡

14. 일사부재리의 효력 또는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죄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죄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② 피고인이 행형법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행형법상의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 내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형상의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형법 범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상습사기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다른 사기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단순사기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확정 판결의 범주에 속한다.

15.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피의자신문과정에 동석하게 허락할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③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④ 피의자신문과정에 피의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증거물은 그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증명하기 위한 본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16.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법원은 검사·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 ㉡ 공판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할 때에는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할 수 있으나 공판준비기일은 재개하지 못한다.
- ㉣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없다.
- ㉤ 형사소송법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판준비절차는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부칠 수 있는 임의적 절차이다.

- ① ㉠, ㉡, ㉢ ② ㉢, ㉣ ③ ㉢, ㉤ ④ ㉢, ㉣, ㉤

17. 체포 및 구속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 ㉡ 검사의 영장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기각결정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다.
- ㉢ 피의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 ㉣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즉시 그를 석방하여야 한다.
- ㉤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 ① ㉠(O), ㉡(X), ㉢(O), ㉣(X), ㉤(O)
 ② ㉠(O), ㉡(O), ㉢(X), ㉣(O), ㉤(X)
 ③ ㉠(X), ㉡(X), ㉢(X), ㉣(O), ㉤(X)
 ④ ㉠(X), ㉡(O), ㉢(X), ㉣(X), ㉤(X)

18.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효한 고소의 존재는 친고죄의 본질적 소송조건을 이루므로 고소의 추완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
- ② 공소사실의 기재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의 기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이를 특정할 기회를 준 다음에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③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그 고발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공소제기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 ④ 공소제기시에 공소사실이 친고죄임을 알면서도 고소 없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고소의 추완을 인정할 수 없지만, 미친고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이 심리결과 친고죄로 판명된 때에는 검사의 공소제기에 비난할 점이 없어 고소의 추완을 인정할 수 있다.

19. 체포 및 구속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피고인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구속하지 못한다.
- ②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 사건인 때에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
- ③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중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 '증인신문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① 판사가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②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증인신문의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③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을 청구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④ 범죄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또는 진술변복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21.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 직후인 자'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
 - ②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현행범인의 체포에는 긴급체포의 경우와 달리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와 같은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③ 수사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다.
 - ④ 일반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그를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2.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 탄핵증거란 실질증거의 증명력을 증강하기 위한 증거를 말한다.
- ㉡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분류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 따른 분류이다.
- ㉢ 피고인의 옷에 묻은 혈흔과 상해진단서 등은 간접증거에 해당한다.
- ㉣ 범죄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은 직접증거이면서 본래의 증거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3. 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주의의 예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도 일반사인에게서는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건조물·항공기·선거내에서 피고인을 수사할 수 있다.
- ③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영장청구시까지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고, 이 경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④ 범행 중 또는 범행지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범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24. 간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다.
- ②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③ 범행에 관한 간접증거는 존재하고 있으나,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만연히 무엇인가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범인이 숨기고 있다고 단정할 것이다.
- ④ 간접증거와 직접증거의 구분은 증거법정주의보다는 자유심증주의에서 더욱 의미를 갖는다.

25.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친고죄 또는 전속적 고발 사건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이 있기 전에도 수사는 허용된다.
- ② 본래 범죄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 불파한 때에는 합정수사가 아니다.
- ③ 전속적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도 전수공무원 등의 중전 고발은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 ④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 사유를 실질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6. 친고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해자가 강간죄의 일부사실(폭행·협박 부분)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는 경우 친고죄의 취지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우선 시켜 일부기소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② 형사소송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친고죄에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 ③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공소제기 할 수 있다.
- ④ 친고죄에 대해 고소가 없는 경우에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일부 사실만 따로 떼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7. 다음은 자백의 임의성과 관련한 내용이다.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그대로의 사실 유·무를 묻자, 피고인들이 동시에 “예, 그랬습니다”하고 답을 하였으나, 재판장의 물음에서는 다시 범행을 부인하였다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기망 내지 편취하였다는 내용까지 자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 검찰에서의 자백이 잠을 깨우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닌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영장없이 연행되어 약 40일간 조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고 검찰에 송치된 후 약 1개월간에 걸쳐 검사로부터 4회 신문물을 받으면서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라도, 피고인이 1·2심 법정에서 검사로부터 폭행·협박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음이 없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신문물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에 송치된 후 4차의 신문을 받으면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소상하게 진술을 하고 있다면, 피고인의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임의성 있는 진술이라고 볼 수 있다.
- ㉣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연히 임의성이 부정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 ② 위법한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며,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 ③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수집된 비밀녹음은 각종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징계절차에서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
- ④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일단 그 집행을 종료하였더라도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한, 유효기간 내에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9. 전문진술(형사소송법 제316조)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인정기준 중의 하나인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경향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전문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한다.
- ③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④ 형사소송법 제316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원진술자가 범행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더라도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

30. 필요적 변호사건과 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이러한 경우 항소심으로서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 ② 변호인의 필요적 변론을 요하는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의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지 않고 재판한 것이 위법은 아니다.
- ③ 국선변호인제도는 구속적부심을 제외하고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할 수는 없으므로, 재심청구인의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것은 적법하다.
- ④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

31.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나 대리인 또는 변호인 중 1인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② 증거동의를 구두변론의 종결 시까지 철회할 수 있다.
- ③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더라도 법원이 그 증거를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기 전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

32. 다음 중 증거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그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서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피고인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된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없다.
- ②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진술을 하거나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법원이 조서의 기재 내용, 형식 등과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범행에 관련한 진술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그 임의성에 관하여 심증을 얻은 때에도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 그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다른 공동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여야만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 ④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형상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33. 재판의 집행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재판의 집행은 재판의 성결상 검사가 지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법관이 한다.
- ② 2개 이상의 형의 집행은 경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
- ③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정지함이 없이 치료감호소로 위탁하여야 한다.
- ④ 본인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34.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① 피고인이 제1심 법정 이래 공소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경우, 증거 목록에 피고인이 경찰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었다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②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의 면전에서 자백한 진술에 따라 사고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사진과 그 진술내용으로 된 사법경찰관 작성의 실황조사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사용이 불가능하다.
- ③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④ 외국에 거주하는 참고인과의 전화대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는 원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다.

35. 성명모용과 위장출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甲이 乙의 이름을 모용하여 乙의 이름이 공소장에 기재된 때에는 乙이 피고인이다.
- ② 공판 중에 모용관계가 판명된 경우에 피모용자에 대하여 공소 기각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 ③ 인정신문단계에서 위장출석이 판명된 때에는 형식적 피고인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④ 인정신문단계에서 위장출석이 밝혀진 경우에 실질적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소를 다시 제기하여야 한다.

36. 약식절차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할 때에도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된다.
- ㉡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어도 상관없다.
- ㉢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는 공소의 제기과 동시에 이루어지면 족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다.
- ㉣ 약식절차에서는 전문법칙에 관한 규정은 물론이고 자백에 관한 법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 ① ㉠, ㉡ ② ㉡, ㉢, ㉣ ③ ㉢ ④ ㉢, ㉣

37.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의함)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 ②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검사는 수소법원 이외의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 ③ 공소제기 후에 강제수사를 허용하는 것은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
- ④ 공소제기 후라도 참고인조사,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공무소 조회 등의 임의수사는 1회 공판기일 전후를 불문하고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38.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② 피고인은 다세대주택의 여러 세대에서 7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중 4건은 범행장소인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위 4건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관련 진술이 매우 사실적·구체적·합리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어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 ③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 ④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

39. 다음 중 엄격한 증명에 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구 도로법 제54조 제2항에 의한 적재량측정 요구
- ㉡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 유무
- ㉢ 알선수재죄에서의 범의
- ㉣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
- ㉤ 증거의 증명력을 감쇄시키는 증거

- ① ㉠, ㉡, ㉢ ② ㉠, ㉢, ㉣
- ③ ㉡, ㉢, ㉣ ④ ㉢, ㉣, ㉤

40. 피고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경찰서장에 의하여 즉결심판이 청구된 자는 피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소송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므로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③ 심신상실자나 형사미성년자도 공소가 제기되면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 ④ 성명모용의 경우에는 공판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피모용자도 피고인에 해당한다.